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4(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 등)의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으로,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중 ‘난임전문상담센터’를 ‘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’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0.21. ~ 12.2.) , 특기할 사항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 중 “난임전문상담센터”를 “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”로 한다.

제12조의4 중 “난임전문상담센터”를 “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3(<u>난임전문상담센터</u> 의 운영위원회)① 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<u>난임전문상담센터</u> 는 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 1~2. (생략) 3. 그 밖에 <u>난임전문상담센터</u> 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(생략)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<u>난임전문상담센터</u> 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~3. (생략) ④ (생략) 제12조의4(<u>난임전문상담센터</u> 의 설치·운영의 위탁)① 보건복지	제12조의3(<u>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</u> 의 운영위원회)① ----- ----- <u>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</u> ----- ----- -----. 1~2. (생략) 3. ----- <u>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</u> 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(생략) ③ ----- ----- ----- <u>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</u> ----- -----. 1~3. (생략) ④ (생략) 제12조의4(<u>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</u> 의 설치·운영의 위탁)① -

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

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-----난임·임산
부심리상담센터-----
-----.

1. (생략)

2. -----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
센터-----

② -----
-----난임·임산
부심리상담센터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난임·임산부심리상
담센터-----
-----.